

2024년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 공고

2024년도 비공용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완속충전기 보급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.

2024. 3. 18.

광 양 시 장

1 모집개요

1. 신청기간 : 2024. 4. 8. ~ 4. 19.
2. 총사업비 : 78,500천원 (설치비 50% 지원, 최대지원금 50만원/대)
3. 보급대수 : 160여대(보조금 신청액에 따라 사업량 변동될 수 있음)
4. 보조금 지원 대상

○ 아래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

- 가. (개인, 사업자) 보조금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거주한 자
(법인·단체) 보조금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광양시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·단체
- 나. 전기자동차 소유자 또는 2024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자
- 다. 거주지 또는 사업장에 충전기 설치 및 자가 주차를 위한 부지를 확보한 자
- 라.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한 내역이 없는 자
- 마. 지방세·세외수입·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는 자

※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중 1명이 동일사업으로 이미 지원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 제외

5. 보조금 지원 충전기

-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(<https://www.ev.or.kr>)에 등록된 수행

기관에서 생산된 충전기로 OCPP1.6 인증을 거친 제품* 또는 도내 기업에서 생산된 충전기에 한함.

* OCPP1.6 인증을 받은 동종의 충전기가 없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한 경우 비공용 충전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

2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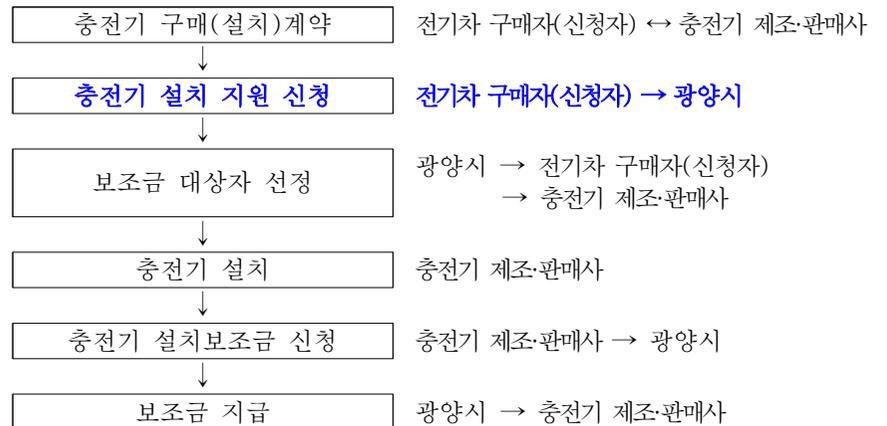
1. 지원기준 : 벽부형 또는 스탠드형
2. 지원단가 : 설치비 50% 지원 (자부담 50%, 최대지원금 50만원/대)

- ※ 설치비는 취득세 및 한전불입금을 제외한 충전기 구매 및 설치비용만 포함
- ※ 신청인당 1대만 지원 가능

<명칭 정의>

- “전기자동차”란 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.
- “충전기”란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.
- “완속충전기”란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등의 전기를 충전하는 시설로 최대 출력값 7kW이상 40kW미만인 충전기를 말한다.
- “비공용 충전기”란 개인 등이 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.

3 보조사업 추진 절차



4 구매 지원 신청 및 대상자 선정 방법

1. 신청기간 : 2024. 4. 8. ~ 4. 19.

2. 신청서류

구분	개 인	법인 등
해당	- 주민등록초본 (신청일 이전 30일내 발급분 인정) - 본인서명사실확인서 (작성방법 예시를 꼭 확인하여 제출 그 외의 용도, 위임받은 사람 성명, 주소지 기입 할 것)	-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원본 - 인감증명서
공통	- 보조금 지원 신청서 (서식1) - 사업 안내 확인서 (서식2) - 현장점검 확인서 (서식3) - 설치업체 작성 - 충전기 설치계약서 ※ 제품가격·설치비 등 구체적 계약금액 작성 - 차량등록증 사본 또는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 확정 증빙서류(교부결정서) - 설치대상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 - 충전기 설치 이용 승낙서 (서식7) ※ 신청자와 설치장소 소유자 다른 경우 토지소유자 (인감날인시) 인감증명서, (서명시) 본인서명확인서 첨부 -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(3개월분) - 가족관계증명서	

3. 신청 접수 및 대상자 선정 방법

- 접수자 : 보조사업자(신청인) ※ 제조·판매사 대리 신청 불가
- 접수방법 : 광양시청 환경과 현장접수
 - 우편접수, 이메일접수 불가
 - 접수시간 : 09:00 ~ 17:00 (점심시간 12:00 ~ 13:00 제외)
 -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, 접수기간 내 서류 보완 완료 원칙
- ※ 접수시간 외 전달·도착된 서류는 접수불가
- 선정방법 : 기간 내 접수 완료 후, 예산 초과시 우선 순위 선정
 - 1순위(소득기준) : 건강보험료 평균 3개월 납부 금액이 낮은순
 - 2순위(광양시 거주기간) : 신청일 기준 연속 거주만 인정
- 결과통보 : 완속충전기 설치업체 통보 및 개인별 문자 통지

5 보조금 지급 신청

1. 보조금 지급신청 : 충전기 제조·판매사

- 보조금 지급신청 기간 :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
- 보조금 지급신청 서류

보조금 지급 신청 서류 내역
① 보조금 지급 요청서 (서식 4) ② 현장설치확인서 (서식 5) ③ 보조금 정산서 (서식 6) ④ 전기안전공사 사용전 점검증 ⑤ 하자보증증권 ⑥ 세금계산서 ⑦ 완속충전기 취득세(지방세) 납부서 ⑧ 보조금 수령용 제작·판매사 통장 사본 ⑨ 청렴이행서약서 (서식 8)

- ※ 보조금은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업체(충전기 제조·판매사)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- ※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2020. 1. 1. 이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취득세(지방세)를 납부해야 함.

6 보조금 선정대상 및 설치사업자 준수사항

1. 전기차 완속충전기 의무 사용기간 : 2년간

- 참여기업은 보조사업을 통해 설치한 충전기에 대하여, 최소 2년간 유지·보수 등 사후관리 의무 있음
- 비공용 충전기는 원칙적으로 충전기 소유자가 유지·관리 등 사후관리 책임 있음
 - 다만, 충전기 설치 후 최소 2년간 제품하자보증 등 사후품질 책임은 충전기 제조사에게 있음

2. 비공용 충전기 설치장소 제한

- 충전기 설치 장소는 광양시에만 설치 가능
- 설치장소는 이면도로 및 타인의 통행에 불편이 있는 곳 등이 아닌 적합한 주차공간 이어야 함.
- 개인 구매자는 거주지 또는 근무 중인 회사, 법인 구매자는 사업장 또는 차고지 등 사업관련 부지에 한하여 설치 가능
- 신청자의 거주지(주민등록 기준)나 근무지(재직증명서, 4대보험 등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근무지) 외 다른 장소에 설치할 경우 비공용 충전기 보조금 지원 불가 (단, 주민등록지 외 거주지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거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보조금 지원 가능)

3. 완속충전기 설치 방법

- 「2024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·운영 지침 (환경부)」에서 정하는 현장조사, 설계도서 작성, 설치공사 등 절차에 따라 충전기를 설치하여야 함.

4. 유의사항

- 참여기업은 신청자가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안내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, 신청자는 설비를 성실히 관리하여 관리소홀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
- 2024 완속충전기 국가지원 사업과 한전 완속충전기 지원사업과 중복신청은 안되며, 추후 중복신청 발견 시 사업을 취소하며, 보조금 지급된 경우 전액 환수
- 전기차 충전기가 이미 설치된 곳은 지원 불가
- 구조물 및 제품의 A/S 주체는 참여기업이므로, 신청자는 참여기업과 계약체결 시 업체의 무상 수리 보증기간 및 처리기준을 정해야 하며, 보증기간이후에 발생하는 수리비용은 신청자가 부담
- 충전기 설치장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광양시는 개입할 수 없으므로, 신청자는 참여기업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
-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부정한 방법(문서 위조 등)으로

보조금을 수령할 시, 보조금 환수, 보급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

- 신청자와 참여기업은 설치완료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최대 30일 이내 사업기한 연장요청이 가능하며, 연장신청서 제출기한은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
- 신청자는 설치확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설비를 폐기처분할 때에는 광양시의 승인 확인

- 붙임
1. [참고1]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방법 예시
 2. [참고2]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제조·판매사 현황
 3. [서식1]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조금 지원신청서
 4. [서식2]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 안내 확인서
 5. [서식3] 현장 점검 확인서
 6. [서식4]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급 요청서
 7. [서식5] 현장 설치 확인서
 8. [서식6] 보조금 정산서
 9. [서식7]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·이용 승낙서
 10. [서식8] 청렴이행서약서

[참고 1]

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

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지 제2호서식]

문서확인번호		※ 이 용지는 위조 식별 표시가 되어 있음	
본인서명사실확인서			
성명 (한자)	()	서명	
주민등록 번호			
주소			
용도	부동산 관련 용도	<input type="checkbox"/> 부동산 이전(매매, 증여 등) <input type="checkbox"/> 제한물권 설정(근저당권 설정, 전세권 설정 등)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가등기설정, 가등기말소 등)	
	그 외의 용도	거래상대방 등	성명(법인명) 주민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 주소
위임받는 사람	성명	(주)참여기업(반드시 설비 설치 기업과 대표명 기재)	
	주소(자격증 소지자 이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)	○○도 ○○시 ○○로 123 (참여기업의 정확한 주소 기입)	
위의 기재사항을 확인합니다. 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between;">(발급 신청자)(서명)</div>			
비고			
발급번호		수수료	300원
위 본인의 서명사실을 확인합니다. 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between;">20년월일</div>			
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읍장·면장·동장 및 출장소장		직인	
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			
1. 서명은 작성자 교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(등록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,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표상의 기호)로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합니다. 2.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번호,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,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란에 적고,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아래의 여백에 주민등록번호를 ()로 표기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. 3. 용도, 수임인란은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며,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이 책임지지 않습니다. 4. 부동산 관련 용도란은 부동산 관련 용도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[]에 √ 표를 하고, 거래상대방 등에는 부동산매수인 등 거래상대방의 성명(법인명), 주민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, 주소를 적습니다. 거래상대방 등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적어 신청합니다. 5. 부동산 관련 이외 용도란은 수요처에서 요청하는 내용을 적습니다. [예시: 자동차대용(매수인의 성명·주민등록번호), 대출보증용, 선박등기용(매수인의 성명 등), 법인등기용, 공탁금 수령용, 보관금 수령용 등 그 용도를 적습니다] 6. 수임인란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법원 등 수요처에 제출하는 경우 수요처의 요청에 따라 위임받는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습니다. 다만, 변호사, 법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자격증 소지자의 성명과 자격명을 기재하면 주소를 기재하지 않습니다(예시: ○○○ 법무사). 7. 발급 이후에 용도, 수임인 등 기재사항을 임의로 고치거나, 이 확인서를 위조·변조하는 경우에는 「형법」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8. 비고란에는 미성년자 또는 한정지신자 표시와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. 9. 발급사실에 대한 확인은 민원24(www.mirwon.go.kr)를 통해 발급일·문서확인번호·주민등록번호·발급기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			

210mm×297mm[특수용지 80g/㎡]

[참고 2]

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제조·판매사 현황

업체명	콜센터	업체명	콜센터
(주)휴맥스이브이	1800-3188	신세계아이앤씨	02-3397-1234
스칼라데이터	1544-5376	(주)타디스테크놀로지	02-6941-0609
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	1600-8025	웰바아이오텍EVC	070-4267-9233
아마노코리아	02-2164-9900	소프트베리	02-6925-4257
엘스리일렉트릭파워	02-6956-9823	(주)펌프킨	031-591-6633
엘에이링크	1660-3175	(주)파워큐브코리아	1833-8014
(주)에버온	1661-7766	태성콘텍	053-856-5188
(주)매니지온	032-431-0066	한화솔루션	1533-3464
(주)씨어스	1522-2640	(주)이지차저	1544-3332
크로커스	1600-2693	쿨사인	02-6295-8055
캐스트프로	070-4855-2090	한국전기차인프라기술(주)	1877-6546
현대엔지니어링	1833-8777	채비(주)	1522-2573
이브이시스(주)	02-2139-3000	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	02-3430-1279
GS차지비	1544-4279	한국전자금융	1533-5522
파킹클라우드	1588-5783	(주)이카플러그	031-778-6181
LG유플러스	1660-0365	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(주)	1522-1782
E1	02-3441-4114	서울씨엔지	031-910-8586
아이마켓코리아	02-3708-5678	(주)클린일렉스	02-1811-1350
딜라이브	1644-3100	(주)플러그링크	1533-0702
이엘일렉트릭	1600-0274	SK일렉링크	1566-1704

※ 무공해차 통합누리집(<https://www.ev.or.kr>) - 구매 및 지원 - 완속충전기
제품안내에서 열람 가능하며, 추후 변동될 수 있음

현장 점검 확인서

1. 신청자 정보 (앞면)					
성명		연락처			
주소					
2. 희망 충전기 종류					
[비공용] <input type="checkbox"/> 완속충전기(스탠드형 또는 벽부형)					
3. 차량 정보					
제작사		차종		확인	<input type="checkbox"/> 차량등록증 <input type="checkbox"/> 2024년 전기차 보조대상 확정증빙 서류
4. 설치장소 및 환경					
장소	<input type="checkbox"/> 주거지 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장(직장)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()				
주소					
설치환경(확인 후 해당란에 체크)					
건물형태	설치위치	소유여부	소유주와의 관계	전력인입	설치타입
<input type="checkbox"/> 단독주택	<input type="checkbox"/> 실내, 지하	<input type="checkbox"/> 소유	<input type="checkbox"/> 본인	<input type="checkbox"/> 모자분할	<input type="checkbox"/> 벽부형
<input type="checkbox"/> 아파트	<input type="checkbox"/> 실외, 노상	<input type="checkbox"/> 임대	<input type="checkbox"/> 가족	<input type="checkbox"/> 한전불입	<input type="checkbox"/> 스탠드폴
<input type="checkbox"/> 연립주택			<input type="checkbox"/> 지인		<input type="checkbox"/> 스탠드
<input type="checkbox"/> 상가			<input type="checkbox"/> 직원		
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			<input type="checkbox"/> 무관		
기타사항					주차공간 확보 <input type="checkbox"/> (필수항목)
5. 전기 수용 용량					
- 고압(모자분할)시 변압기 용량 확인			<input type="checkbox"/> 확인		
- 저압 경우 계약전력 확인			<input type="checkbox"/> 확인		
6. 중복설치 여부					
운 영 중	<input type="checkbox"/> 급속(기)	<input type="checkbox"/> 완속(기)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사항 없음		
설치예정	<input type="checkbox"/> 급속(기)	<input type="checkbox"/> 완속(기)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사항 없음		
7. 조사자					
상호		연락처			
성명	(서명)	조사일	년 월 일		

8. 현장 확인 사진 (뒷면)
▼ 전경(전체) 사진
▼ 설치장소 예정지 사진

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 청렴이행서약서

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광양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, 귀 광양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.

아울러,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광양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, 이를 위반 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.

< 벌칙 규정(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~제40조) >

-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(제37조~제40조)
 - ▶ 제37조(벌칙)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
 - ▶ 제38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
 1. 제13조(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)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
 2. 제21조(재산 처분의 제한)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
 - ▶ 제39조(벌칙) ① 제14조(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) 또는 제15조(지방보조사업의 인계 등)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
 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
 1. 제16조(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) 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
 2. 제16조(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) 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
 3. 제17조(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) 또는 제29조(검사)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
 - ▶ 제40조(양벌규정)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·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024년 월 일

신청자 성 명(기관명) (서명 또는 인)

광양시장 귀하